

1. 미국 주류 라벨링과 수입 절차

- 미 연방알콜관리법 (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; FAA) 하에서 연방기관인 주류연초세무무역국 (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; TTB)은 미국 국내외 상용되는 와인, 증류주, 맥아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음
 - TTB 에서는 주류의 연방면허, 라벨, 광고, 안전관리, 연방소비세의 부과 및 징수 등 주류행정 전반에 걸친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
 - 각 주정부 별로 독립적인 알콜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으며, 주정부면허 발급, 유통, 소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, 주류 산업 종사자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
- FAA 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주류는 미 식품의약국 (FDA)의 규제를 받음.

<FDA의 규제를 받는 주류의 종류>

- ABV (alcohol by volume) 7% 미만인 와인
 - 포도주, 스파클링 또는 탄산 와인, 과일주, 사케, 알콜성분을 제거한 와인 등 포함
- 맥아가 아닌 다른 대체품 - 수수, 쌀, 밀 - 로 만들었거나 또는 홉 없이 만들어진 맥주 (예: 콤부차, 글루텐 프리 맥주)
- TTB 의 규제 대상이 되는 주류는 TTB 에서 주관하는 법규에 따라서 라벨을 제작해야 하며, FDA 의 규제 대상이 되는 주류는 FDA 에서 주관하는 법규에 따라서 라벨을 제작해야 함
 - TTB 는 주류의 칼로리, 영양성분 등에 대해서 “Serving Facts” 를 제품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

- TTB 에서 제시하는 와인 라벨의 샘플: <https://ttb.gov/pdf/brochures/p51901.pdf>
- TTB 에서 제시하는 맥아주(맥주 - 맥아와 홉을 사용하여 알콜 발효작용으로 만든 술) 라벨의 샘플: <https://www.ttb.gov/pdf/brochures/p51903.pdf>
- TTB 에서 제시하는 증류주 라벨의 샘플: <https://www.ttb.gov/pdf/brochures/p51902.pdf>
- FDA의 규제 대상이 되는 주류는 FDA 의 라벨 규제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“Nutrition Facts” , ingredient list 등을 제품에 기재하여야 하며, 기재하는 양식도 FDA에서 제시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. 또한 식품제조시설 등록 등,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(FSMA)도 준수하여야 함
- ABV 0.5% 이상인 모든 알콜 음료는 하기의 경고문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함

GOVERNMENT WARNING: (1) ACCORDING TO THE SURGEON GENERAL, WOMEN SHOULD NOT DRINK ALCOHOLIC BEVERAGES DURING PREGNANCY BECAUSE OF THE RISK OF BIRTH DEFECTS. (2)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IMPAIRS YOUR ABILITY TO DRIVE A CAR OR OPERATE MACHINERY, AND MAY CAUSE HEALTH PROBLEMS.

- TTB 에서는 “와인, 증류주, 맥아주의 라벨링 및 광고 규제의 현대화”를 위하여 2018년 11월에 개정안을 작성하여 연방공보에 게재하고 의견접수 기간을 2019년 6월 29일까지로 연기하면서 개정안의 확정안 발표가 연기되었음
<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documents/2018/11/26/2018-24446/modernization-of-the-labeling-and-advertising-regulations-for-wine-distilled-spirits-and-malt>)
- 개정안에서는 Wine 의 정의 기준에서 Rice Wine 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며, Rice Wine 에 사케, 경주법주를 포함시켰음.
- 이에 따라 경주법주는 와인으로 정의되어 라벨링과 광고는 TTB의 와인 라벨링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
- 안동소주는 증류주 Distilled Spirits 으로 분류되므로 TTB 의 Distilled Spirits 라벨링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
- 미국의 주류를 수입하는 절차
 - 미국에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TTB 로부터 Importer's Permit 을 받아야 함
 - ‘Application for Basic Permit under 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(<https://ttb.gov/forms/f510024.pdf>)’ 를 서면 또는 온라인 (<https://ttb.gov/ponl/permits-online.shtml>)으로 접수

- Importer's Permit 을 받으려면 수입업자는 반드시 미국내에 사업체와 직원이 있어야 하며, 미국내 사업체와 직원을 유지할 수 없는 수입업자라면 현재 permit 을 소유하고 있는 수입업자와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음
 - 수입하는 주류를 판매하는 것 이외에 다른 주류를 도매로 판매하고자 한다면, Wholesaler's Basic Permit 을 별도 획득하여야 함
 - 수입업자는 주류에 대한 연방 소비세와 관세의 지불 의무가 있음
-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주류 제품별로 라벨 승인을 받아야 함
- Importer's Permit 을 획득한 이후,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주류의 각 제품별 라벨을 TTB 에 신고하고 Certificate of Label Approval (COLA) 를 받아야 함
 - '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/Exemption of Label/Bottle Approval (<https://ttb.gov/forms/f510031.pdf>)' 을 TTB 의 알콜라벨링표식부서(Alcohol Labeling and Formulation Division)에 서면 또는 온라인 (<https://ttb.gov/labeling/colas.shtml>)으로 접수
- 각 주정부 별로 알콜제품 취급을 허용하는 면허가 있으므로, 주정부 면허를 획득하여야 함
- 각 주별 주류를 관장하는 기관: <https://ttb.gov/wine/state-ABC.shtml>
-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FDA 에서 요구하는 Prior Notice 를 하여야 하여, 주류도 이에 포함됨
- Prior Notice 는 FDA 의 웹사이트(Prior Notice System Interface PNSI) 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, CBP의 통관 사이트 (ABI) 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음
 - PNSI 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15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ABI 는 3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함

2. 시사점

- 미국으로의 주류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주류연초세무무역국 (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; TTB)의 관련 규정들을 사전 숙지하고

현지 통관사 및 식품 전문 변호사 등과의 자문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
사전 해소를 통한 수출 필요.

3. 관련 웹사이트

<https://www.ttb.gov/>

<저작권자 ©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& kati.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